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,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의3을 삭제한다.

제23조제2항제9호 중 “소형·저가주택등”을 “주택 또는 분양권등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9호 중 “소형·저가주택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: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 이하인 경우

나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·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(수도권은 5억원) 이하인 경우

다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(수도권은 5억원) 이하인 경우

별표 1 제1호가목2)가)부터 다)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소형·저가주택등”을 “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의 적용례)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7의2. (생략) 7의3. “소형·저가주택등”이란 <u>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.</u> 8. ~ 10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8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) ① (생략)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제2호의2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. 1. ~ 8. (생략) 9.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<u>소형·저가주택등의</u> 가격을	제23조(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<u>주택 또는 분양권등</u> -----

<신 설>

<신 설>

10. ~ 12. (생 략)

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 이하인 경우

나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·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(수도권은 5억원) 이하인 경우

다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(수도권은 5억원) 이하인 경우

10. ~ 12. (현행과 같음)